

# 의료원 직제

1973. 2. 26. 제정

2016. 6. 16. 개정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직제는 「이화여자대학교 직제」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(이하 “의료원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직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2.2.13.)

제2조(기능)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의료원 각 기관의 업무 조정 및 운영
2. 의학 및 간호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, 연구 및 진료의 조성과 이에 관련된 시설의 투자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타 기관과 의료원 차원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(개정 2016.2.26.)
4. 기타 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

제3조(적용) 의료원의 원무는 「이화여자대학교 직제」에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이 직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.

제3조의2(기구) 의료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기본기관  
의료원장 · 의료원운영위원회
2. 부속병원  
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
3. 행정기관
  - 가. 의료원 행정기관
    - (1) 기획조정실
    - (2) 경영본부
  - 나. 목동병원 행정기관
    - (1) 진료부
    - (2) 응급진료부
    - (3) 교육수련부
    - (4) 간호부
    - (5) 사무부
4. 진료부
  - 가. 목동병원 전문진료기관 및 의원
    - (1) 여성암병원

(2) 김포국제공항의원

나. 목동병원 진료과

- (1) 내과(소화기, 순환기, 호흡기, 내분비, 신장, 혈액종양, 알레르기, 류마티스, 감염)
- (2) 신경과
- (3) 정신건강의학과
- (4) 외과
- (5) 정형외과
- (6) 신경외과
- (7) 흉부외과
- (8) 성형외과
- (9) 마취통증의학과
- (10) 산부인과
- (11) 소아청소년과
- (12) 안과
- (13) 이비인후과
- (14) 피부과
- (15) 비뇨기과
- (16) 영상의학과
- (17) 방사선종양학과
- (18) 병리과
- (19) 진단검사의학과
- (20) 재활의학과
- (21) 가정의학과
- (22) 핵의학과
- (23) 직업환경의학과
- (24) 응급의학과
- (25) 치과
- (26) 건진외과학과

다. 목동병원 진료센터(실)

- (1) 심혈관센터
- (2) 통합암센터
- (3) 간/췌장담도센터
- (4) 호흡기센터
- (5) 신장센터
- (6) 당뇨센터
- (7) 건강증진센터
- (8) 모자센터

- (9) 뇌졸중센터
- (10) 로봇수술센터
- (11) 두경부암·갑상선센터
- (12) 인공방광/방광암센터
- (13) 장기이식센터
- (14) 하지중증외상센터
- (15) 말초신경수술센터
- (16) 어깨질환수술센터
- (17) 부정맥센터
- (18) 염증성질환센터
- (19) 공공의료교육센터
- (20) 부인종양센터
- (21) 유방갑상선암센터
- (22) 권역응급의료센터
- (23) 내시경실
- (24) 인공신장실
- (25) 수술실
- (26) 중환자실
- (27) NICU(Neonatal Intensive Care Unit)
- (28) 호스피스실

5. 연구기관

가. 의료원 소속 연구기관

- (1) 이화융합의학연구원
- (2) 이화GHIG(Global Health Institute for Girls)

나. 목동병원 소속 연구기관

- (1) 융합의학연구원
- (2) 임상시험센터
- (3) IRB(Institutional Review Board)
- (4) 피험자보호센터

6. 기타

가. 의료원 소속

- (1) 원목실
- (2) 기획조정실: 대외협력센터

나. 목동병원 소속

- (1) 국제협력센터
- (2) QPS(Quality Improvement & Patient Safety)센터
- (3) 진료협력센터

## 의료원 직제

- (4) 진료부: 법무실
  - (5) 진료부: 감염관리실
  - (6) 진료부: CS(Customer Satisfaction)실
- [본조신설 2016.6.16.]

## 제2장 의료원

제4조(의료원장) ① 의료원에 원장을 두되 의무부총장이 겸직한다.

② 의료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의료원장 유고시는 병원장이 연장자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직원) ① 의료원 직원의 정원은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. (개정 2010.3.12.)

② 의료원의 직원은 의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. (개정 2001.4.6.)

③ 의료원의 임시직원은 해당 기관장의 제청으로 의료원장이 임면한다.

제6조(부속병원) 의료원에 다음의 병원을 둔다.

- 1. 삭제 (2012.2.13.)
- 2. 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

제6조의2(의료원소속 연구기관) ① 의료원에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2.2.13.)

- 1. 삭제 (2006.6.23.)
- 2. 이화융합의학연구원 (신설 2012.2.13.)
- 3. 이화GHIG (신설 2015.12.29.)
- 4. 목동병원: 융합의학연구원, 임상시험센터, IRB, 피험자보험센터 (신설 2016.6.16.)

② 의료원 소속 연구기관은 의료원장 소속하에 두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(신설 2000.10.13.)

제6조의3(지원협력기관) ① 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자매병원, 연계병원을 정해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0.3.12.]

제7조(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과학부와의 관계) 의학전문대학원장 및 간호대학장은 의료원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원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 (개정 2013.12.19., 2016.3.23.)

제8조(의료원의 운영·관리) ① 의료원에 기획조정실, 경영본부 및 원목실을 둔다. (개정 2016.2.26.)

② 의료원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(개정 2001.4.6.)

제9조(기획조정실)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을 두고, 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, 실장을 교원으로 보하는 경우 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고, 일반직으로 보하는 경우 의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보한다. 부실장은 의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보한다. (개정 2001.4.6., 2016.2.26.)

② 실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기획, 예산, 홍보, 전산 및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,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, 홍보과, 전산과, 대외협력센터 및 대외협력과를 두고,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고, 과에 과장을 두며, 과장은 의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보한다. (개정 2010.3.12., 2016.6.16.)

③ 기획예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의 심사 분석
2. 의료원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
3. 종합예산 편성
4. 예산집행의 조정 및 통계
5. 예산집행 실적의 심사 분석
6. 경영분석 및 업적 평가
7. 조사업무
8. 업무실적 통계
9. 삭제 (2016.6.16.)
10. 삭제 (2001.4.6.)
11. 삭제 (2001.4.6.)
12. 정원관리
13. 기타 기획·예산에 관한 사항 (개정 2001.4.6.)

④ 홍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주보, 원보, 홍보물 등의 편집 및 발행
2. 대내외 병원 홍보 업무
3. 홍보자료 수집 및 제공
4. 대 언론기관 업무
5. HIP업무
6. 홈페이지 관리
7. 행사 촬영 및 자료 관리
8. 연보편찬 (신설 2016.6.16.)
9. 기타 병원 홍보에 관한 업무 (개정 2016.6.16.)

[본조신설 2000.3.24.]

⑤ 전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전산화 계획 수립

## 의료원 직제

2.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  3. 전산기의 유지 관리
  4. 의료 및 경영정보 관리
  5. 의료원 시스템의 전산망 운영
  6. 기타 전산에 관한 사항
- ⑥ 대외협력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(신설 2016.6.16.)
1. 기부금 접수 및 관리
  2. 의료원 기부금 데이터 관리
  3. 후원자 예우 관리
  4. 후원자 발굴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
  5. 기부금 관련 홍보 및 교육

제9조의2(경영본부) ① 경영본부에 본부장을 두고, 본부장을 교원으로 보하는 경우 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며, 일반직으로 보하는 경우 의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보한다.

- ② 본부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경영분석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③ 경영본부에 경영지원과를 두고, 과에 과장을 두며, 과장은 의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보한다.
- ④ 경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1. 의료원 및 부속병원의 경영분석
  2. 의료 원가계산
  3.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경영수지 분석
  4. 기타 경영분석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16.2.26.]

제9조의3(원목실) ① 원목실에 실장을 둘 수 있으며, 원목실장을 교원으로 보하는 경우 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고, 일반직으로 보하는 경우 의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보한다.

- ② 원목실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 및 부속병원의 종교 활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[본조신설 2016.2.26.]

## 제3장 부속병원

### 제1절 삭제 (2012.2.13.)

제10조 삭제 (2012.2.13.)

제11조 삭제 (2012.2.13.)

제12조 삭제 (2012.2.13.)

- 제13조 삭제 (2012.2.13.)
- 제14조 삭제 (2012.2.13.)
- 제15조 삭제 (2012.2.13.)
- 제16조 삭제 (2012.2.13.)
- 제17조 삭제 (2012.2.13.)

## 제2절 부속목동병원

제18조(부속목동병원장) ① 부속목동병원에 병원장을 두고, 병원장은 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한다.

② 부속목동병원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병원의 원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.

③ 병원장 유고시에는 진료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(개정 2013.2.28.)

제19조(부속목동병원의 조직) ① 부속목동병원에 전문진료기관으로 여성암병원을 두고, 의원으로 김포국제공항의원을 둔다. (개정 2013.2.28., 2016.6.16.)

② 부속목동병원에 진료부, 응급진료부, 교육수련부, 간호부, 사무부 및 필요한 센터를 둔다. (신설 2016.6.16.)

③ 부속목동병원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16.6.16.)

제19조의2(전문진료기관 및 의원) ① 여성암병원에 원장을 두고, 김포국제공항의원에 소장을 두며, 여성암병원장 및 김포국제공항의원소장은 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한다.

② 여성암병원장 및 김포국제공항의원소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여성암병원 및 김포국제공항의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③ 여성암병원에 필요한 센터(실)을 두며, 센터(실)장은 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한다. [본조신설 2016.6.16.]

제20조 삭제 (2016.2.26.)

제21조(진료부) ① 진료부에 부원장을 두고, 진료부원장은 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한다. (개정 2013.2.28., 2016.6.16.)

② 진료부원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진료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13.2.28.)

③ 진료부에 진료 각 과(센터, 실)를 두며, 약제부를 두고 약제부에 약제과를 두며, 영양과, 사회사업과, 의무기록과를 두고, 진료 각 과(센터, 실)에 과(센터, 실)장을 두며, 진료 각 과(센터, 실)장은 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고 약제부장 및 일반직, 기술직 과장(기사장)은 의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보한다. (개정 2013.2.28., 2016.6.16.)

④ 진료 각 과(센터, 실)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(개정 2016.6.16.)

1. 진료, 교육 및 연구활동
2. 전공의 교육
3. 과(센터, 실) 운영 (개정 2016.6.16.)

## 의료원 직제

4. 기타 과(센터, 실) 업무에 관한 사항 (개정 2016.6.16.)

⑤ 약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처방 및 처치용 약품의 조제
2. 의약품의 투약
3.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의 관리
4. 약사위원회 관련 업무
5. 기타 약제업무에 관한 사항

⑥ 영양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식단의 작성, 조리 및 배식에 관한 업무
2. 영양가 분석 및 치료식 관리
3. 급식통계 작성
4. 영양상담 및 교육
5. 기타 급식에 관한 사항

⑦ 사회사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환자의 사회배경 및 가정환경 조사 보고
2. 무의탁환자, 기아 등의 의뢰 알선
3. 자원봉사대 운영
4. 기타 사회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

⑧ 의무기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의무기록의 대출, 반납 및 보관 관리
2. 환자 진료의 각종 통계 분석
3. 환자명 색인 및 진찰권 등록번호 관리
4. 질병별 및 수술별 분류의 기록 유지
5. 기타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

⑨ 삭제 (2016.6.16.)

제21조2(응급진료부) ① 응급진료부에 부장을 두고, 응급진료부장은 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한다.

② 응급진료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응급의료기관 평가,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리, 재난대응 체계구축 및 교육 등 응급진료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③ 응급진료부에 진료 각 과(센터, 실) 및 필요한 과를 두며, 진료 각 과(센터, 실)장은 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고, 일반직, 기술직 과장(기사장)은 의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보한다.

[본조신설 2016.6.16.]

제22조(교육수련부) ① 교육수련부에 부장을 두고, 교육수련부장은 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한다. (개정 2016.6.16.)

② 교육수련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수련의 평가, 수련의 교육 및 관리, 교직원 교육 및 연수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10.3.12., 2016.6.16.)



제23조(간호부) ① 간호부에 부원장을 두고, 간호부원장을 교원으로 보하는 경우 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며, 일반적으로 보하는 경우 의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보한다. (개정 2013.2.28., 2016.2.26.)

② 간호부원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간호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13.2.28.)

③ 간호부에 교육행정간호과, 병동간호과, 외래간호과, 특수간호과 및 특성화간호과를 두고, 과에 과장을 두며, 과장은 의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보한다. (개정 2010.3.12., 2016.6.16.)

④ 교육행정간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(개정 1999.2.27.)

1. 간호인력의 교육·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
2. 간호인력의 인력계획 수립 및 관리
3. 간호업무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리 (개정 2016.6.16.)
4. 간호인력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(개정 2016.6.16.)
5. 간호인력의 근태 및 평가 관리
6. 간호분야 관련 위탁 및 수탁교육 관리
7. 임상간호의 연구계획 수립 및 평가
8. 간호의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시행
9. 공공보건의로 임상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시행 (개정 2016.6.16.)
10. 기타 간호인력의 교육 및 행정에 관한 사항

⑤ 병동간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(개정 1999.2.27., 2016.6.16.)

1. 일반병동 관리
2. 일반병동 입원환자 관리
3. 일반병동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
4. 기타 일반병동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

⑥ 외래간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(신설 1999.2.27., 2016.6.16.)

1. 외래진료부서 및 응급의료센터(성인, 소아) 관리
2. 외래 및 응급의료센터(성인, 소아) 환자 관리
3. 외래 및 응급의료센터(성인, 소아)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
4. 삭제 (2016.6.16.)
5. 응급의료센터(성인, 소아) 및 지역병원 이송환자 관리
6. 삭제 (2016.6.16.)
7. 기타 외래진료부서 및 응급의료센터(성인, 소아)의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

⑦ 특수간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(신설 1999.2.27., 2016.6.16.)

1. 수술실, 회복실, 공급실, 중환자실 및 중환아실 관리
2. 수술실, 회복실, 공급실, 중환자실 및 중환아실 환자와 보호자 교육 및 상담
3. 기타 수술실, 회복실, 공급실, 중환자실 및 중환아실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

⑧ 특성화간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(신설 2016.6.16.)

## 의료원 직제

1. 여성암병원, 통합암센터, 장기이식센터 및 모자센터 관리
2. 여성암병원, 통합암센터, 장기이식센터 및 모자센터 환자관리
3. 여성암병원, 통합암센터, 장기이식센터 및 모자센터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
4.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
5. 기타 여성암병원, 통합암센터, 장기이식센터 및 모자센터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

제24조(사무부) ① 사무부에 부장을 둔다. 사무부장은 의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보한다. (개정 2010.3.12., 2016.2.26.)

② 사무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10.3.12.)

③ 사무부에 원무과, 보험과, 복지과, 총무과, 관리과, 시설과 및 경리과를 두고, 과에 과장을 두며, 과장은 의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보한다. (개정 2010.3.12., 2016.2.26.)

④ 삭제 (2001.4.6.)

⑤ 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(개정 2000.3.24.)

1. 입·퇴원 수속
2. 입·퇴원에 관한 증명서 발급
3. 구급차 운영
4. 각종 진료수입 및 환자통계 작성
5. 초·재진 접수 수납 및 진료비 산정
6. 미수금 관리
7. 기타 원무 업무에 관한 사항

⑥ 보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(신설 2000.3.24.)

1.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및 청구
2.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 및 조정
3. 의료수가 관리
4. 기타 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

⑦ 삭제 (2001.4.6.)

⑧ 삭제 (2001.4.6.)

⑨ 삭제 (2001.4.6.)

⑩ 복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(개정 2000.3.24.)

1. 신용협동조합의 운영
2. 신용협동조합원(교직원)의 출자금 관리
3. 신용협동조합의 여수신 업무
4. 신용협동조합 이사회 관련 업무
5. 의료 외 직영사업 업무
6. 기타 복지과 업무에 관한 사항

⑪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(신설 2016.2.26.)

1. 직원 임면, 휴직, 승진 및 승급 관련 업무

2. 교직원의 배치, 전보, 파견, 보직임면 및 교원인사 관련 업무
  3. 인사고과 관련 업무
  4. 교직원 복무(휴가, 출장, 근태 등) 관련 업무
  5. 인사기록 관리 및 통계
  6. 교직원의 상벌 관련 업무
  7. 노사관리 관련 업무
  8. 교직원의 연금, 사회보험, 교원공제 및 공무상요양 관련 업무
  9. 고시 관련 업무
  10. 의료원장 및 병원장 직인 관리
  11. 문서 수발과 통제
  12. 우편물 관리
  13. 보수 책정 예외 사항 관련 업무
  14. 통신, 경비, 미화, 조경, 소독, 직물의 세탁 및 제봉 관리 등 업무
  15. 민방위 관련 업무
  16. 임대, 용역 및 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
  17. 제 의식 및 행사 관련 업무
  18. 대관청 허가, 지정, 변경 등 업무
  19. 기타 타부서 주관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
- ⑫ 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(신설 2016.2.26.)
1. 제 물품의 소요판단, 시장조사 및 수급 계획수립
  2. 의료원 및 부속병원의 제 물품(약품, 의료기구, 일반용품 등)의 통합 품목 선정, 계약 및 구매
  3. 의료원 및 부속병원의 각종 공사 및 보수 관련 계약
  4. 고정자산의 유지 및 감가상각 관리
  5. 재물 조사 및 관리
  6. 물품 검수
  7. 외자, 차관 및 리스 관련 업무
  8. 기타 의료원 및 부속병원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
- ⑬ 시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(신설 2016.2.26.)
1. 의료원 및 부속병원의 시설공사 및 개·보수의 설계, 시공, 감독 및 준공검사
  2. 각종 시설(전기, 냉·난방, 상하수도 등)의 관리 및 보수
  3. 일반 비품의 보수
  4. 기타 의료원 및 부속병원 시설에 관한 사항
- ⑭ 경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(신설 2016.2.26.)
1. 의료원 및 부속병원 자금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
  2. 의료원내 자금의 전입, 전출 관련 업무
  3. 회계장부의 기장 및 관리

## 의료원 직제

4. 특별회계 및 제 연구비 관련 업무
5. 재무제표의 작성 및 결산
6. 현금 출납
7. 세무 관련 업무
8. 기타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

제24조의2(센터, 실) ① 목동병원에 국제협력센터, QPS센터, 진료협력센터를 두며,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, 센터장은 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한다.

② 국제협력센터에 국제협력과를 두고, 과에 과장을 두며, 과장은 의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보한다.

③ 국제협력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해외환자 유치사업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획
2.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업무
3. 병원방문 해외환자에 대한 원활한 진료서비스 제공지원
4. 해외환자 방문자료 유지 및 관리
5. 병원 해외홍보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

④ QPS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질향상(QI)활동 관리 및 질 향상과 환자안전교육
2. 환자안전 관리
3. 각종 지표관리
4. 진료 및 업무과정 개선활동 지원
5. 의료기관 평가 등 외부평가 주관

⑤ 진료협력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협력 병의원 의뢰환자 관리
2. 협력 병의원 현황 및 정보관리
3. 의사회 간담회 및 연수교육 지원
4. 진료회신 관련 업무
5. 기타 진료협력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16.6.16.]

## 제4장 위원회

제25조(의료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원에 의료원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의료원장, 의학전문대학원장, 간호대학장, 각 부속병원장,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이사장과 총장이 지명·위촉하는 위원 각 2명 이내로 구성하며, 의료원장은 위원장이 된다. (개정 2013.12.19., 2016.3.23.)

③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

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의료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제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과제 등을 연구·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제26조(운영위원회의 직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의료원의 장·단기 발전 계획
2. 의료원의 중요 정책 및 방침의 결정
3. 의료원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4. 의료원의 교육, 연구 및 진료 발전에 관한 사항
5. 기타 의료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#### 제5장 보칙

제27조(위임규정) 의료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 (1973. 2. 26. 제정)

이 직제는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1993. 7. 9. 개정)

이 직제는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1999. 2. 27. 개정)

이 직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0. 3. 24. 개정)

이 직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0. 10. 13. 개정)

이 직제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1. 4. 6. 개정)

이 직제는 2001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6. 6. 23. 개정)

의료원 직제

①(시행일) 이 직제는 200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규정) 이 직제의 시행과 동시에 신경과학연구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(2010. 3. 12. 개정)

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2. 2. 13. 개정)

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3. 2. 28. 개정)

이 직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3. 12. 19. 개정)

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5조제2항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5. 12. 29. 개정)

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6. 2. 26. 개정)

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6. 3. 23. 개정)

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6. 6. 16. 개정)

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